

중국 BEPS 다자협약 비준, 중국 조세조약의 새로운 장을 열다

2022. 07

Issue 18

개요

2022년 5월 25일, 중국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BEPS)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¹ (이하 "<다자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²를 OECD에 제출했습니다. 비준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지역 각각의 <다자협약>에 관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다자협약>은 2022년 9월 1일부터 중국본토에서 발효됩니다. 홍콩 지역의 경우, <다자협약>은 관련 현지 입법 절차³완료 후, 2022년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자협약>의 비준은 중국 본토의 BEPS Action Plan 시행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준서는 중국 본토가 채택한 입장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조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준된 버전은 중국이 2017년 6월 7일 체결한 버전과 차이는 크지 않으며, 주로 일부 신규 체결/실효된 조세조약을 추가/삭제했고, 중국 본토가 채택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 본토는 기본적으로 <다자협약>에서 BEPS Action Plan의 최소 기준 조항(예: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거주단체의 세무상 거주지 결정, 조약의 남용 방지를 위한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 "PPT") 및 상호합의절차 실행을 위한 요건 등)을 채택했으나, 일부 비강제성 조항(예: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및 중재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조세조약의 양 체결국 모두가 <다자협약>을 비준했으며, 채택한 입장이 동일하고 <다자협약>이 발효된 경우, 관련 조세조약 조항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제거래를 영위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은 각각 해당 국가에서의 <다자협약>에 대한 입장과 발효 현황을 확인하여 적시에 해당 사항이 사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 내용

<다자협약> 출범 배경

일부 BEPS Action Plan은 기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개정해야만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수천 건의 양국간 조세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양국간에 일일이 협상을 통해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BEPS 제15항 Action Plan은 기존 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다자협약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말, OECD는 <다자협약> 문서와 해석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자협약>은 기존 조세조약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조항들을 통해 일시에 현행 조세조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중국을 포함한 99개 조세 관할구역이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는데⁴, 이는 전세계 1820건 이상의 조세조약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2개 관할구역은 이미 <다자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는 880건 이상의 조세조약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자협약>이 포함하는 BEPS Action Plan

<다자협약>은 아래 4가지 항목의 BEPS Action Pla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Action Plan에 대한 <다자협약> 조문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성 불일치 해소(BEPS Action Plan 2): 투과과세단체, 이중거주단체 및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면제 방법 채택과 관련된 조세조약 조항. 각각의 조세 관할구역은 해당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조약 남용 방지 (BEPS Action Plan 6): 주요목적테스트(PPT), 간소화된 LOB(Limitation on benefits, 조세조약 혜택 제한) 조항,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유기간 설정 등을 포함하며, 조약을 선택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약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함. 해당 Action Plan은 최소 기준으로 각 조세 관할구역에 주요목적테스트(PPT)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 조세 관할구역은 간소화된 LOB 조항과 기타 조약 남용 방지 요구 사항은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BEPS Action Plan 7): 고정사업장 판정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기법 사용, 특정 활동 면제 규정 수정, 계약 분할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함. 각각의 조세 관할구역은 해당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효과적 분쟁 해결 (BEPS Action Plan 14): 조세조약에서 상호합의절차를 신의성실하게 집행하고, 상호합의절차에서 강제구속력이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을 요구함.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개선은 강제성을 띠나, 각각의 조세 관할구역은 강제 구속력이 있는 중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중국 본토가 비준한 <다자협약>

중국이 이번에 비준한 <다자협약>은 2017년 체결한 버전과 비교하여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부 해당되는 조세조약만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입장의 상세 내용은 부록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지역 <다자협약> 채택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세조약

현재 중국 본토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100여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국이 비준한 문서는 100건의 기 발효된 조세조약을 포괄하나, 7건의 기 발효된 조세조약(칠레, 인도, 뉴질랜드, 스페인, 콩고공화국(수도: 브라자빌), 앙골라, 르완다) 및 아직 발효되지 않은 2건의 조세조약(케냐, 아르헨티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자협약>이 포함하지 않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체결되었거나 의정서를 통해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많은 부분에서 이미 BEPS가 제안하는 최소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당 조세조약들을 <다자협약> 비준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본토가 홍콩 지역, 마카오 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약과 대만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약(미발효)는 주권국가간에 체결한 협정이 아니기에 모두 비준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지역은 이미 2019년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하여 BEPS의 제안 사항을 조세협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혼성 불일치 해소

이중거주단체에 관해, <다자협약>은 그 실제 관리 기구의 소재지, 등록지 또는 설립지 등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상호합의를 통해 거주자 신분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당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유의할 점은, 계약국 양 당사자가 거주자 신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어떠한 조세 혜택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혼성 불일치 해소에 대한 기타 옵션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약 남용 방지

중국의 비준서에서의 조약 남용 방지에 관한 입장은 전반적으로 앞서 새로 체결 또는 재체결한 조세조약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1) 중국은 주요 목적 테스트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BEPS Action Plan 6이 제안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주요 목적 테스트에 따르면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은, 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 새로 체결 또는 재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모두 유사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자협약>의 주요 목적 테스트 조항 채택에 따라 관련 규정은 비준서에 포함되는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됩니다.
- 2) 중국이 간소화된 LOB 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중국이 최근 체결한 조세조약에 반영된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중국은 배당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최소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입장은 중국이 최근 새로 체결한 조세조약 및 중국의 현행 국내법 해석과 일치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중국 국내법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과다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non-immovable property rich companies)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이전 3년 내 모든 기간에 중국의 부동산 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이어야만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다자협약>이 요구하는 1년 규정보다 더욱 엄격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중국의 비준서는 1년의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다자협약> 중 고정사업장 회피에 관한 모든 조항(제12조~제15조)의 경우, 중국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양자간 조세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중국 고정사업장 판정에 대한 입장은 <다자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중국의 조세조약 해석에 대한 통지문(국세발[2010]75호)은 이미 대리인 활동,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포함하여 유사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효과적 분쟁 해결

중국은 <다자협약>이 요구하는 충분한 상호합의절차 진행, 특수관계자 이익이 체결관할지역 일방 당사자에서 조정 후 다른 당사자가 상응하여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조항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지역이 비준한 <다자협약>

홍콩 지역은 <다자협약>의 각 조항마다 자체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홍콩이 이미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 중인 39건의 조세조약을 포함하나, 4건의 최근 체결하여 발효 중인 조세조약(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세르비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지역과 중국 본토, 마카오 지역이 체결한 조세협약의 또한 비준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입장의 상세 내용은 부록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지역 <다자협약> 채택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협약>의 실행 및 효력 발생 기간

<다자협약>의 조항은 상당히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조세 관할구역은 각 조항의 채택/비채택을 선택할 수 있고, 각 조항은 또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는 <다자협약>의 적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서, <다자협약> 관련 체결국 양자간에 동일한 옵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서로 다른 옵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협약>이 2022년 9월 1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효력이 발생하나 특정 조세조약 조항 개정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중국에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발효 시기, 양자간 비준서가 모두 해당 조세조약을 포함하는지 여부, 양자간 동일한 옵션 적용 선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두 체결 관할구역의 <다자협약> 비준서가 모두 발효되고 해당 조세조약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양자가 모두 동일한 조항의 동일한 옵션을 선택했을 때에만 관련 조세조약의 조항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OECD 공식 홈페이지는 <다자협약>에

관한 5 Step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⁵ 예를 들어, 비록 중국의 비준서는 중국-독일간 조세조약을 포함하나, 독일의 비준서는 해당 조세조약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중국-독일간 조세조약은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적시에 <다자협약>이 양자간 조세조약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OECD 공식 홈페이지는 정기적으로 <다자협약>에 매칭되는 데이터베이스⁶를 업데이트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5 Step 가이드에 따르면, <다자협약>이 체약국 양자에 대해 2022년 9월 1일 이전에 모두 효력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조세조약 조항이 중국 본토와 홍콩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본토:

- 원천지 과세(taxes withheld at source) 관련 조항은 다음 **Calendar year** 1일부터 적용, 따라서 중국 본토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 적용됨.
- 기타 세부담 관련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짐, 즉 해당 조항은 발효일 6개월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업무부터 적용, 따라서 중국 본토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해 적용됨.

홍콩 지역:

- 원천지 과세 관련 조항은 다음 **과세연도** 1일부터 적용, 따라서 홍콩 지역의 경우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거래에 대해 적용됨.
- 기타 세부담 관련 조항은 홍콩 지역이 관련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OECD에 통지한 후 30일 이후부터 6개월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업무부터 적용, 따라서 홍콩지역은 빠르면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 거래에 대해 적용됨.

핵심 요약

<다자협약> 비준은 중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국의 조세조약에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비록 중국은 <다자협약> 최소 기준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특히,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이 <다자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도 해당 새로운 조세 환경은 중국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조약상 혜택을 더욱 신중하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채택한 주요 목적 테스트 규칙의 경우 세무기관이 각종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목적에 대해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상업적 목적, 거래구조의 경제적 실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다자협약>은 국제 조세 리스크를 낮추고 조세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조세 분쟁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자협약>이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 체약국의 입장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ECD의 <다자협약> 매칭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참고하는 것 외에, PwC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상세한 가이드를 발표하여 기업과 개인이 더욱 쉽게 <다자협약>의 특정 조세조약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록:

중국 본토 및 홍콩 지역 <다자협약> 채택 입장

BEPS 조치	<다자협약> 조문	내용	중국 본토 입장	중국 홍콩 입장
	제2조 - 용어의 해석	대상 조세조약	<다자협약>은 2022년 5월 25일 기준,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100건의 기 발효된 조세조약을 포괄함. (중국이 칠레, 인도, 뉴질랜드, 스페인, 콩고공화국 (수도:브라자빌), 앙골라, 아르헨티나, 르완다, 가봉, 우간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포함하지 않음; 중국 본토가 홍콩 지역, 마카오 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약 및 중국 본토가 대만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약은 포함하지 않음)	<다자협약>은 2022년 5월 25일 기준, 홍콩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39건의 조세조약을 포괄함. (홍콩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세르비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홍콩이 중국 본토, 마카오와 체결한 조세협약은 포함하지 않음)
Action Plan 2: 혼성불 일치	제 3 조 - 투과과세단체	투과과세단체 또는 계약을 통해 취득한 소득은 계약국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제 4 조 - 이중거주단체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국의 거주자 신분을 확정.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혜택을 향유할 수 없음	채택	채택하지 않음
	제 5 조 - 이중과세방지 방법의 적용	다자협약에서 정한 3 가지 옵션에 대해 계약국이 적용을 선택하고 통지를 한 경우에만 적용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Action Plan 6: 조약 남용 방지	제 6 조 - 대상조세조약의 목적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대상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조세조약의 전문에 명시	채택	채택 홍콩이 벨라루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이미 해당 서문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은 나머지 38건의 조세조약에 대해 적용.

BEPS 조치	<다자협약> 조문	내용	중국 본토 입장	중국 홍콩 입장
	제7조 - 조약 남용 방지	<p>체약국은 조세조약에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목적 테스트 - 주요 목적 테스트와 결합된 간소화된 LOB 조항 - 주요 목적 테스트와 결합된 상세한 LOB 조항 	주요 목적 테스트 채택	주요 목적 테스트 채택, 단 간소화된 LOB 조항은 채택하지 않음 홍콩이 벨라루스 및 파키스탄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이미 해당 주요 목적 테스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은 나머지 37 건의 조세조약에 대해 적용.
	제 8 조 - 배당 제한세율 적용 조건	배당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365 일 최소 보유 기준을 충족	채택	채택하지 않음
	제 9 조 - 부동산에서 주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소득	양도 전 365 일 이내 기간 중 양도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치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 면제	채택하지 않음 (주: 중국 본토법은 더 엄격한 3 년 기한 제한을 설정해 두고 있음)	채택하지 않음
	제 10 조 - 제 3 지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남용 방지 규칙	저세율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한 남용 방지 규정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제 11 조 - 조세조약의 자국 거주자 과세권 제한	체약국이 내국법에 따라 자국 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	채택	채택하지 않음
Action Plan 7: 고정사	제 12 조 - 위탁대리인 계약 및 유사 방법을 통한	위탁대리인 계약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고정사업장 규정 적용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BEPS 조치	<다자협약> 조문	내용	중국 본토 입장	중국 홍콩 입장
업장 회피	고정사업장 인위적 회피			
	제 13 조 - 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고정사업장 인위적 회피	분할 방지 테스트를 통해 특정 활동 면제 조항 수정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제 14 조 - 계약의 분할	특수관계기업간 분할 계약을 통해 12 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분할 방지 규정 도입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제 15 조 - 기업에 긴밀히 관련된 사람의 정의	제 12 조, 13 조, 14 조에 언급된 "긴밀히 관련된 사람(특수관계)"에 대한 해석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Action Plan 14: 효과적 분쟁 해결	제 16 조 - 상호합의절차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제공하여 상호합의절차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채택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안건 제출하는 경우 제외)	채택 홍콩과 체결된 대부분의 기존 조세조약에는 이미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은 홍콩이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만 적용.
	제 17 조 - 대응조정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조정을 제시하여야 함	채택	채택 현행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음
	제 18 조~제 26 조 - 중재	상호합의절차에서 강제 구속력이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	채택하지 않음	채택하지 않음

주석

1. <다자협약> 영문본: <https://www.oecd.org/tax/treaties/multilateral-convention-to-implement-tax-treaty-related-measures-to-prevent-BEPS.pdf>
<다자협약> 중문 번역본: <https://www.oecd.org/tax/treaties/beps-multilateral-instrument-text-translation-chinese.pdf>
<다자협약> 관련 해석문: <https://www.oecd.org/tax/treaties/explanatory-statement-multilateral-convention-to-implement-tax-treaty-related-measures-to-prevent-BEPS.pdf>
2. 중국 본토의 비준서 (중/영): <https://www.oecd.org/tax/treaties/beps-mli-position-china-instrument-deposit.pdf>
홍콩의 비준서 (중/영): <https://www.oecd.org/tax/treaties/beps-mli-position-hong-kong-instrument-deposit.pdf>
3. 홍콩 지역은 행정 장관이 행정 회의에서 홍콩 <세무조례> 제 49 조에 따라 관련 명령을 내리고, 입법회에 제출하여 제정 후,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에 <다자협약>이 발효됩니다.
4. <다자협약> 서명 및 비준 상황: <https://www.oecd.org/tax/treaties/beps-mli-signatories-and-parties.pdf>
5. <다자협약> 5 Step 적용 가이드: <https://www.oecd.org/tax/treaties/step-by-step-tool-on-the-application-of-the-MLI.pdf>
6. <다자협약> 매칭 데이터베이스: <https://www.oecd.org/tax/treaties/mli-matching-database.htm>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TP) 최지혁 (86) (10) 6533-3676 john.j.choi@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이석원 (86) (21) 2323-8500 seok.won.yi@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2323-8888 suyoun.s.kim@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2 年 7 月 15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威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2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